

공결신청 안내

대학원 교학팀

■ 공결 신청 방법 안내

- 첨부된 공결신청서 작성 및 공결 필요 교과목 담당교수님의 서명을 받아 증빙자료 등과 함께 대학원 교학팀으로 서면 제출

■ 공결관련 규정(대학원 학칙 시행세칙)

제 15 조 (공결)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 증빙서류와 함께 공결처리원을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교과목 수업시간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다.

1. 병역법,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된 경우. 이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에게 소집 기간 동안 성적처리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안되며, 수업 결손이 발생한 학생에게 수업자료 제공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2.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 참가
3.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상사
4.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: 월 1일 이내, 학기당 3일 이내(시험기간은 제외)
5. 졸업예정자(마지막 학기 등록자)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: 해당 기간
6. 장애학생이 일신상의 이유로 공결 요청한 경우
7.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조치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
8. 기타 상응하는 이유가 있다고 담당교수가 인정한 경우

■ 공결 증빙서류 및 절차 안내

★ 공결 신청 관련 유의 사항

- 공결 신청 기간: 행사 종료일 및 사유 발생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학생이 직접 신청서 서면 제출, 서류 승인 후 취소 불가
- 증빙서류 제출 기간: 모든 공결 증빙서류는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(서류 제출 마감일이 주말·공휴일인 경우 익일 평일까지 제출)
- ※ 보강일 공결 신청 증빙서류는 중간·기말 시험시간 시작 전일까지 제출
- 공결 신청 불가 수업: 원격수업
 - 사유 중 '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조치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(코로나19 등)'에 A·B형독감 등은 해당되지 않음. A·B형독감 등은 '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담당교수가 인정한 경우'로 신청하여야 함.

1. 증빙서류 및 인정 기간

가. 병역법, 예비군법 등에 관계 법령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된 경우

(해당 기관 직인 또는 담당자의 도장 날인 되어있어야 함)

※ 동원소집이 아닌 개인 지원(의경시험, 해군면접 등)은 기타 공결로 신청

나.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 행사 참가

: 총장이 허가한 공식 행사에 대한 문서(공문)를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

다.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상사

구분		공결 인정일	제출 증빙서류
상	조부모, 부모, 배우자	해당일로부터 최대 5일	①사망진단서(또는 시체검안서) ②가족관계증명서
	형제, 자매	해당일로부터 최대 3일	
결혼	본인	해당일로부터 최대 5일	①청첩장 ②가족관계증명서
	형제, 자매	해당일로부터 최대 1일	

라.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 (월 1일, 학기당 3일 이내/시험기간 신청 불가)

: 증빙서류 제출 의무 없음

단, 생리 공결은 해당일로부터 3일 이내 신청 시 인정.(미리 신청 시 인정 불가)

마.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: 재직 시작일부터 공결 신청 가능

- 신청 자격 기준: 마지막 학기 등록자(초과학기자 신청 가능)
- 조기취업공결 신청 최초 1회에 한하여 증빙서류(재직증명서+건강보험가입확인서) 필수 첨부
- 정규직 또는 '정규직 채용 전제형 인턴' 취업에 한하여 조기취업공결 신청 가능
(추후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, 승인 취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)
-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로 대체 가능
(계약기간-해당학기 최소 6개월 이상)
- 건강보험가입확인서 제출 불가 시 재직증명서만 제출하고 발급가능 시점에 제출
(우선적으로 회사와 직접 연락하여 확인)
- 학기 중 취업이 종료될 경우, 대학원 교학팀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조기취업 공결 승인된 수업에 출석을 시작/재개해야 함. 미통보, 미출석 시 무단결석 처리될 수 있음.
- ※ 출결 및 시험과 관련하여 공결 신청 전 담당교수와 상담필수, 상담 미진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.

바. 장애학생이 일신상의 이유로 공결 요청한 경우

- 공결처리원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

사.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관련

- 공결 사유: '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조치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' 체크
- 병행 수업/비대면 수업의 경우 수업 수강 우선

아. 기타 상응하는 이유가 있다고 담당교수가 인정한 경우: 학기당 최대 3회까지 인정

- 병원에 다녀온 경우,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(처방전, 진료비 계산 영수증은 인정불가)
+ 공결처리원(교수님 서명 必) 제출
- 병원에 입원한 경우, 입·퇴원확인서 + 공결처리원(교수님 서명 必) 제출
(해당 날짜, 병원 직인 또는 원장 도장 날인 되어있어야 함)
(입원한 경우, 입원기간을 1회로 인정)

※ 반드시 병원에 입원했을 때만 병원에 입원한 경우 사유로 신청해야 함

2. 신청 절차 및 방법

- 공결처리원(교과목 담당교수님 서명 必) 및 관련 증빙서류를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
(대학원 교학팀 내 학생 소속 대학원으로 제출)
- 교수님 서명받을 시 반드시 증빙서류를 보여드려야 함
- 공결 허위신청(진단서 위조, 날짜 수정, 싸인 위조 등) 적발 시 학칙에 따라 엄중 처벌됨.